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1월 일 (제 297 회)

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박종성 의원 외 6인
발의연월일	2011년 1월 10일

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1년 1월 10일

발 의 자 : 박종성 의원

최병윤·김영주·김양희
정지숙·유완백·임헌경의원

1. 개정이유

- “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”의 제명이 조례내용과 차이가 있어 “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”로 개정하고
-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목의 변경

- 「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」로 변경

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

- ‘~의 규정에 의하여’를 ‘~에 따라’로 변경
- 조례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 등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.
- 그 밖에 일본식 표현(기타 등), 어려운 용어의 정비 등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 등(별첨)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협의함
- 다. 예산조치 : 예산조치사항 없음.
- 라.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”를 “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”로, “사용료”를 “시설 사용료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분임토의실, 어학실 및 전산실습실”을 “분임토의실 및 전산실습실”로 하다.

제3조제1항과 제3항 중 “의한”을 각각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당할 때에는”을 “해당하면”으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당하는 경우에는”을 “해당하면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천재지변 기타”를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과 제2항 중 “사용료”를 각각 “시설 사용료”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당될 때에는”을 “해당하면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사용기간중”을 “사용기간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훼손 또는 망실하였을”을 “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”로, “변상 조치하여야”를 “변상조치를 하여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</u></p>	<p><u>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의 <u>사용료 징수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사용범위) 충청북도자치연수원(이하 “연수원”이라 한다)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대강당, 강의실, 분임토의실, <u>어학실 및 전산실습실 등 교육시설물</u></p> <p>2.~3. 생략</p> <p>제3조(사용허가 및 신청) ① 연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연수원 사용신청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생략</p> <p>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의 <u>시설 사용료 징수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사용범위) 충청북도자치연수원(이하 “연수원”이라 한다) 시설물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대강당, 강의실, 분임토의실 및 <u>전산실습실 등 교육시설물</u></p> <p>2.~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사용허가 및 신청) ① 연수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<u>따른</u> 연수원 사용신청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<u>따른</u> 신청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사용허가의 제한)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<u>해당할 때에는</u>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~4. 생략</p>	<p>제4조(사용허가의 제한)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<u>해당하면</u>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~4. 생략</p>
<p>제5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연수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<u>해당하는 경우에는</u>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 생략</p> <p>2. <u>천재지변</u>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</p> <p>3. <u>기타</u>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p>	<p>제5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연수원장은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<u>해당하면</u>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천재지변이나 그 밖의</u>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</p> <p>3. <u>그 밖에</u> 연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p>
<p>제6조(사용료) ① 연수원장은 사용자로부터 <u>사용료</u>를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사용료</u>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.</p>	<p>제6조(사용료) ① 연수원장은 사용자로부터 <u>시설 사용료</u>를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시설 사용료</u>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사용료 감면)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<u>해당될 때에는</u>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생략 2. <u>기타</u> 연수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<p>제9조(사용자의 책임) ① 사용자는 <u>사용기간중</u>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<u>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</u> 그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<u>변상 조치</u>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 제2항 별표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제7조(사용료 감면)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<u>해당하면</u>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<u>그 밖에</u> 연수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<p>제9조(사용자의 책임) ① 사용자는 <u>사용기간 중</u>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사용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<u>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</u> 그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 <개정 2009.4.1>

제140조(사용료 등의 부과·징수, 이의신청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.

②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

③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.

⑤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.

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

-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<개정 2010.3.31>